

## 제 2 절 환 경

### 1. 환경관리

#### 가. 환경문제와 환경법

##### 1) 환경문제의 대두

인간에 의한 자연계로 오염물질의 배출은 인류의 생존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세 이전까지는 인간의 생활이 소박·단순하고 인구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자연의 자정능력(Self-purification)에 미치지 못하였고 따라서 환경오염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8C 중엽의 산업혁명과 그 후 계속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업화의 진전, 도시화,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 등은 자연의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금세기에 와서는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정도가 되었다.

아무튼 누적된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로 인하여 야기된 생존의 위기는 지금까지의 개발지상주의적 사고방식과 더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의식에 일대경종이 되었고 그 결과 인류 전체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촉발시켰으니 그것이 바로 1972. 6. 5 ~ 6. 16까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 환경회의(The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였다.

113개국에서 대표를 파견한 유엔인간 환경회의는 약 10일간의 토의결과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의 중요성 및 모든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살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유엔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과 행동계획(Action Plan)이라고 할 수 있는 109개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한편, UN은 같은 해 12월 제27회 유엔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산하기구로서 유엔환경계획(UNEP)을 탄생시킴으로써 인류사회는 지구적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럼을 갖게 되었다.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후에도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영향이 어느 한 국가에 그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지구 전체에 파급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는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의 강하, 지구의 온난화, 토지의 사막화 현상 등이 그것이다. 오존층의 파괴는 엄청난 피부암환자를 발생시키고, 산성비는 식물과 어류 등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토양을 산성화시켜 식량감소를 초래하고 각종 질병을 야기하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는 해수면의 상승, 물 부족 현상, 토지의 사막화, 열섬현상, 기상이변 등을 초래하여 자연생태계의 파괴, 식량감소, 인구의 이동을 촉발시키고 결국은 지구를 가난과 가뭄 그리고 전염병의 창궐과 전쟁으로 몰아 갈 수 있다.

따라서 환경파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환경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아래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등 국제환경협약이 속속 체결되게 되었다.

한편, 냉전종식에 따른 동서간 갈등이 해소된 것도 환경문제가 국가간의 주요 협력과제로 부상하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인류는 1972년 유엔인간 환경회의 이후의 지구환경보전 활동을 되돌아봄과 동시에 장래의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구차원에서 그 최초의 회의가 개최된 때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에 다시 모이게 되었으니, 1992. 6. 3.~ 6. 14.까지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바로 그것이다. 110여 개국의 국가정상을 포함하여 178개국이 대표를 파견하고 3천여 명의 비정부기구(NGO) 대표가 참석함으로써 역사상 최대의 국제회의가 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지침인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의제21”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150개국이 이에 서명하였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자칫 서로 상충되기 쉬운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고 양립시킬 수 있는 개념을 창출·공식화하였는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 바로 그것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 함은 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한 개발은 그 주체의 부작용 때문에 머지않아 그 한계에 부딪칠 것이므로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2) 지방의제21 추진

이러한 배경에 따라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 실천계획인 『Agenda21』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만든 21세기 장기 환경전략 프로그램인 『푸른고성21』을 2000년 제5회 환경의 날을 맞아 선포하였다.

각계의 군민대표, 기업체, 행정 등의 참여로 2000. 3월에 결성된 푸른고성21추진협의회에서는 3개 분과 27명으로 구성하였다.

푸른고성21추진협의회에서는 21세기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한

푸른도시 고성을 위하여 군민 환경보전 실천 행동강령을 분야별, 단계별로 담고 있다.

가) 푸른고성21의 기본방향

### 기본방향

1. 고성만·자란만 권역의 연안수질 개선
2. 내륙권역의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
3. 당항포·당동만유역의 연안수질보전
4. 자연환경관리
5. 대기, 소음에 의한 환경피해 최소화
6. 폐기물관리 철저
7. 친환경 농업, 임업, 수산업으로 발전
8. 환경보전형 생활 패턴의 정착
9. 환경정보 및 환경교육의 체계 구축

나) 환경선언문 선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고성건설을 위하여 고성군의 환경의지를 천명하고 모든 군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이 하나의 환경공동체로써 다함께 참여하여 푸른고성을 만들고 우리고장은 물론 지구환경보전에 이바지하도록 다음의 일을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 고성군 환경현장

우리 고성은 옛 소가야의 도읍지로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살아 숨쉬고 산과 바다와 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이 풍부한 살기 좋은 고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산업화에 따른 개발에 치중하고 생활의 편의와 풍요만 추구하는 동안에 자연환경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고 환경친화적인 푸른고성을 가꾸는 것이 권리이자 책무임을 깨닫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도록 환경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며 환경과 조화되는 발전을 추구한다.
- 우리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데 힘쓴다.
- 우리는 모든 생산활동에 있어 환경보호가 우선임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 우리는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한 환경교육에 최선을 다한다.

### 나. 환경법의 연혁

환경오염의 발생은 화산·지진활동과 같은 자연적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한 것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경우이다.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한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도시화·산업화·공업화가 추진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혁명 초기의 단계에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로 인한 불편을 감내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산업화가 환경문제보다 우선시 되었다. 따라서 법률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공업화·도시화가 가속화 되면서 수질·대기·토양·해양·방사능오염, 소음·진동·악취 등 각종 오염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정도는 이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고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공업화·도시화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도시화·공업화의 중요성과 동일시하여 이를 어떻게 조화 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오염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등 법적인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법적인 규제는 먼저 사법 분야에서 등장하였다. 환경오염이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오염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방해배제 또는 예방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민사적 해결만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에 환경오염에 대한 여러 경험을 거치면서 행정적·형사적 규제를 하게 된 것이다.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환경문제가 산업화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공해방지법 시대(1960년대~1970년대 중반)

가) 지구차원의 환경문제가 산업혁명이후 공업화과정에서 발생하였듯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도 제3공화국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먼저 공업화를 이룩한 선진국의 환경오염피해를 겪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196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이라 할 수 있는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선진제국의 입법추세에 맞추어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였지만, 이 당시는 경제규모가 미약한 상황에서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출발단계였기 때문에 환경오염문제의 심각화에 따른 대책에서 보다는 선진국의 선례를 염려한 환경론자들의 우려와 외자도입과 관련하여 제정되었다고 하겠다.

나) 따라서 공해방지법은 전문21개조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의 입법으로 위생법적인 성격이 강하였기에, 지정된 공해방지구역에

소재한 공장(사업장)에 대해서만 공해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공해방지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해를 다루는 전담기관이나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의 조치가 없었으며 또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1967. 5월에야 제정됨으로 인해 공해입법의 명목에 그쳤을 뿐 법 실효성 확보에는 미흡하였다고 하겠다. 그 후 60년대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공해현상이 국지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1971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공해대책 의지를 보였는바, 이 개정에 의해 배출시설의 개념이 도입되어 환경행정에 있어 규제방법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다) 그 외에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이 1963. 12월에 제정되어 독성물질을 독물·특정독물·극물로 분류·관리하게 되었으며, 오물청소법이 1961. 12. 30. 제정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에 대해 오물처리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관리케 함과 아울러 특별청소지역안의 건물소유자등에 대해서도 변소 설치 등의 위생적 유지·관리의무를 부여하여 관리케 하였다.

## 2) 환경보전법시대(197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가) 1970년대의 도시화·산업화의 급진전으로 우리나라 환경문제가 심각화·다양화됨으로 인해 종래의 공해방지법으로서는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입법이 요구됨에 따라 1977. 12월에 환경보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 법에 비로소 환경기준설정, 환경영향평가제도, 특별대책지역지정 등이 도입됨으로 인해 종래의 공해방지적 성격의 소극적 입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환경보전적 성격의 입법으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그 후 3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사전 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 대책들이 더욱 보완되었다.

나) 그 외에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채택에 따라 국제적인 해양오염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으

로 인해 1977. 12월에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농촌지역 근대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폐비닐문제 등이 심각함에 따라 합성수지 폐기물관리를 위해 1979. 12월에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을 제정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3. 5월에 환경오염방지사업법을 제정하여 환경관리공단의 전신인 환경오염방지 사업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 3)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시대(1990년대 초반이후)

가)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종래의 환경보전법 체계로는 환경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곤란하게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 대체로 환경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하는 후진국인 국가에서는 단일의 환경입법을 제정하여 환경입법의 구색만 갖추는 것으로 족하나 우리나라는 점차 다양화·현저화 되는 환경문제를 단일법체제로 대응하므로 인해 입법의 비대화 현상을 가져오고, 중요한 입법사항들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행정규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입법형식상의 기형화현상을 가져오며, 때로는 위헌시비의 문제를 제기시키기도 하는 등 단일법체제로 인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환경정책에 대한 다양화·적극화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입법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연적이었다고 하겠다.

나) 따라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오염매체별로 개별 환경대책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헌법상의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의 개별대책법의 기본방향과 이념을 명확히 해 줌으로써, 헌법과 개별대책법을 연계시켜 주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그 법적 성격이 규제법이나 집행법이 아닌 정책법으로써 환경관계 개별대책법의 헌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하겠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러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다. 현 황

1) 우리나라는 제8차 헌법개정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 즉 환경권을 입법화함과 동시에 국가에게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할 의무를 지우고 또한 국민에게는 기본적인 의무의 하나로서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2) 헌법에 규정된 환경권의 확보를 위해 입법으로 구체화함에 있어 현재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법은 44개이며, 환경부외에 타 부처에서 관련법규에서 환경관련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100여개에 이르고 있다.

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44개법 중 사전예방적인 성격이 강한 법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있으며, 대기, 수질, 폐기물등 매체별 관리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등이 있고, 각 개별대책법의 집행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특별회계법등이 있는바, 체계도를 그리면 아래와 같다.

## 2. 환경관리기반의 강화

### 가. 환경기본조례 제정

#### 1) 제정 취지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고성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함에 이바지하고자 1998. 11월에 제정·공포하였다.

## 2) 주요내용

고성군환경기본조례는 총2장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장은 총칙으로써 목적, 기본이념, 각 주체별 책무와 역할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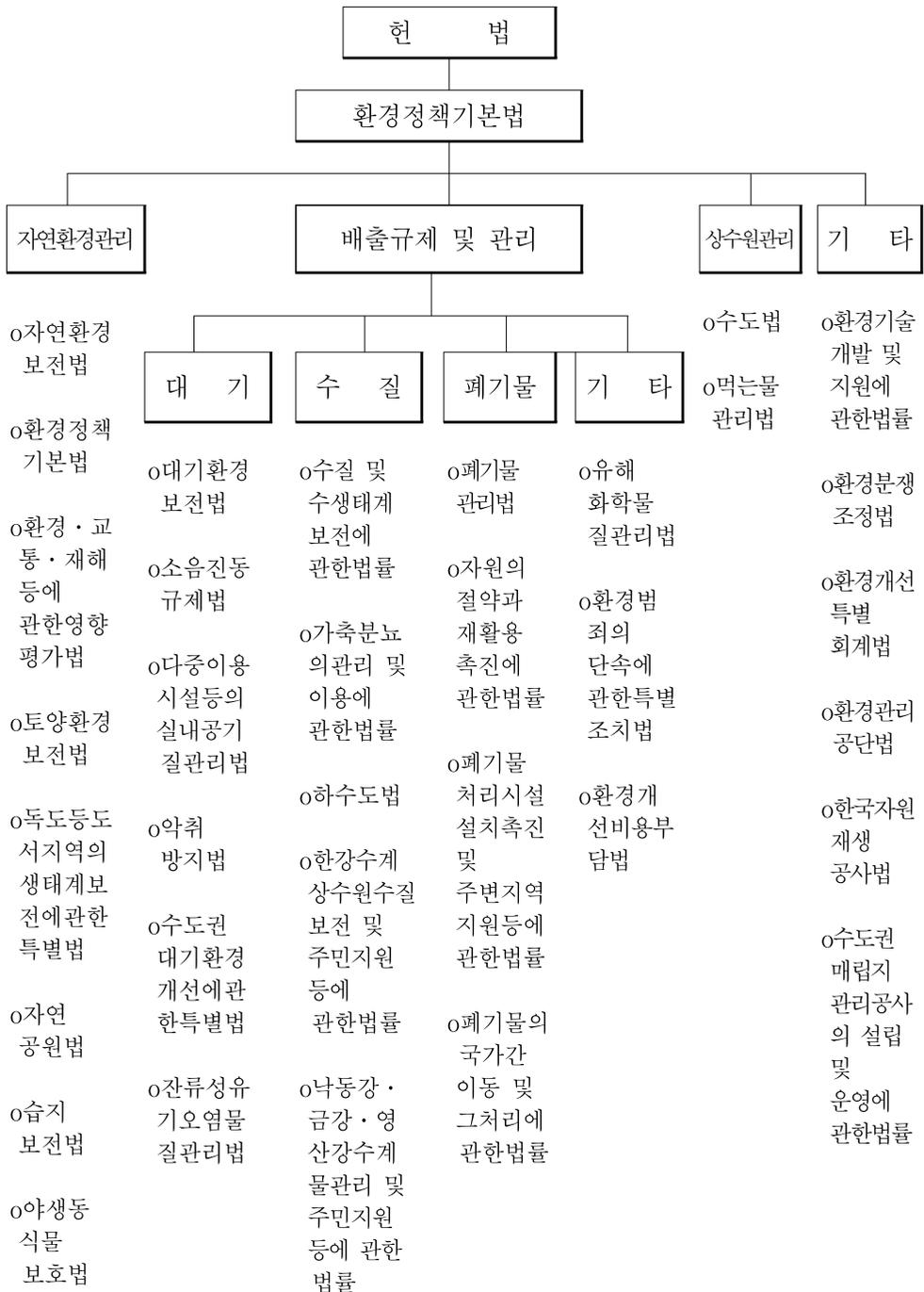
나) 제2장 환경보전 기본시책에는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시설, 환경보전기금, 재정지원 및 군민들이 환경행정에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한 기본 방향들을 수록

## 나. 환경분쟁조정제도

### 1) 개요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과거 개발시대에는 잠재되어 있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 재산상 피해로 일어난 분쟁, 쓰레기 소각장 등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다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환경 분쟁은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적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차이 때문에 개인적인 접촉으로는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며, 법원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할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있고, 비용과 시간도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공평타당성을 취하고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 절차의 신속성, 전문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상의 구제절차로서 환경분쟁 조정제도가 필요하다.



## 2) 환경분쟁조정 절차 및 실적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시·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 분쟁의 알선·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분쟁의 재정(裁定),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다. 환경신문고 설치 운영

### 1) 시행 배경

고성군에서는 한정된 단속인력만으로는 시·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순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환경오염행위의 감시·단속에 한계가 있어 전방위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폐수불법 방류, 자동차매연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담창구 필요성에 따라 1996. 3월부터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 2) 신고대상

자동차매연, 공사장먼지, 공장악취, 폐수무단방류, 하천 내 세차, 쓰레기 불법소각, 불법투기, 자연생태계 파괴,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등 환경오염 전반에 대하여 국번없이 128번을 이용하면 된다.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낙동강 유역환경청 포상금 지급 의뢰)

| 구 분 | 보 상 금                                    | 비 고                         |
|-----|--|-----------------------------|
| 징역형 | 1,000,000원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 일을 기준으로 함 |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br>단, 1,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나)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 행 정 처 분 명                    | 보 상 금                  |          |                      |
|------------------------------|------------------------|----------|----------------------|
|                              | 최 고                    | 최 저      | 고성군                  |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 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 300,000원<br>(500,000원) | 100,000원 | 100,000<br>(150,000) |
| 영업정지, 사용중지, 조업 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200,000원<br>(300,000원) | 50,000원  | 50,000<br>(75,000)   |
| 경고, 개선 및 시정명령                | 100,000원               | 30,000원  | 30,000               |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다) 배출부과금(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라)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

- 환경오염(훼손)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현지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모니터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 캠페인 참석자 등에게 홍보 차원에서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환경신문고 신고, 처리 현황】**

(단위:건)

| 계  | 수질 | 대기 | 폐기물 | 자동차매연 | 소음진동 및 기타 |
|----|----|----|-----|-------|-----------|
| 71 | 6  | 25 | 24  | 9     | 7         |

## 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 행정계획 등 국가정책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일련의 행정절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20세기 후반 자원고갈과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전통적·사후적·매체별 환경정책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종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써 도입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1969년 미국이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캐나다(1973년), 호주와 독일(1974년) 등이 도입하였고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을 포함하여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다.

### 2) 우리나라의 영향평가제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77년 환경보전법에 처음 도입되었고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사업 및 시설을 대상으로 미리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도입되었다.

재해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홍수피해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에 도입되었고, 인구영향평가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도입되어 '84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 3) 통합영향평가법 제정취지 및 배경

그 동안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동일한 사업이 2가지 이상의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경우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등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영향평가에 관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7. 4. 23.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개선을 경제활성화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1998. 2. 12.에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정한 후 관계부처의 2년여에 걸친 통합작업 끝에 1999. 12. 3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0. 12. 30.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예정대로 2001. 1. 1.부터 통합영향평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영향평가 통합의 기본방향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평가절차를 통일하고 영향평가서 작성을 단일화하는 것이었다.

## 마.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으로서 개별법 또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규정(총리훈령 제299호)’을 근거로 실시하여 왔으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 ①대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②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③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단계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변천과정

### 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사전협의

일찍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전원개발특별법에 의한 전원개발실시계획,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각 개별법령에서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부처 협의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의 투자가 확대되고, 국민소득 및 여가의 증대로 관광지, 체육시설 등 각종 위락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역개발사업 등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들 개발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사전 환경성 검토의 실시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93. 1월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를 근거로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였고, 1994. 6월에는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여 개별법령에 협의 근거가 없는 행정계획이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중·소규모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하여 왔다.

### 나)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협의

총리훈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①그 대상을 공공사업에 국한하고 있어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민간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비록 입지가 부적정하다 할지라도 이를 제한할 수단이 없었으며, ②환경

영향평가대상사업은 제외토록 되어있어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었고,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와 미리 협의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또한 제외하고 있어 환경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계획이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즉, 국토이용계획이나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경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왔으나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전협의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계획도 많아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중전의 총리훈령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9. 12. 31.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법정제도로 도입한데 이어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①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②사전환경성 검토시의 구비서류를 구체화하는 한편, ③협의의 절차, 협의기간을 정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환경성검토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바. 환경개선부담금

### 1) 근거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실제 오염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 2)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

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 시설물의 경우 :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차량 중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각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 3) 부과·징수 절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하고 있으며 납기 마감일은 각각 말일로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부담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 5%가 추가되고 중가산금은 없으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 1.~ 6. 30.까지 | 9. 16.~ 9. 30일까지         |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 1.~12. 31.까지 | 다음연도<br>3. 16.~ 3. 31.까지 |

### 4) 부과·징수 실적

####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단위:천원)

| 구분        | 부과     |         | 징수     |         | 미징수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34,901 | 924,347 | 17,726 | 477,707 | 17,175 | 446,640 |
| 2007년도 소계 | 15,821 | 419,711 | 2,319  | 58,993  | 13,502 | 360,718 |

|        |     |        |         |        |         |        |         |
|--------|-----|--------|---------|--------|---------|--------|---------|
| 이전     | 시설물 | 644    | 86,319  | 336    | 13,471  | 308    | 72,848  |
|        | 자동차 | 15,177 | 333,392 | 1,983  | 45,522  | 13,194 | 287,870 |
| 2008년도 | 소계  | 19,080 | 504,636 | 15,407 | 418,714 | 3,673  | 85,922  |
|        | 시설물 | 1,393  | 125,936 | 1,262  | 115,760 | 131    | 10,176  |
|        | 자동차 | 17,687 | 378,700 | 14,145 | 302,954 | 3,542  | 75,746  |

작성자 : 환경정책담당 지 태 찬  
 확인자 : 환 경 과 장 박 복 선

### 3. 분야별 환경관리 대책

#### 가. 자연환경 및 토양보전대책

##### 1) 자연생태계 보호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자연환경 속에서 삶에 필요한 온갖 물질을 얻어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자연은 기후를 조절하고 오염물질의 흡수·분해·동화하는 자정 작용을 통하여 대기정화, 수원함양, 휴양공간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대기, 물, 토양 등 무기환경과 동물, 식물 등의 생물로 구성되고 이들은 기능면에서 상호 끊임없이 생산, 분해, 소비 등 물질순환을 이루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 가는데 이를 생태계라 한다.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균형과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산성비에 의한 산림 및 생태계의 파괴, 탄산가스 증가 등에 의한 기후의 변화, 오존층 파괴 등으로 자연환경은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

자연생태계는 일단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며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대책을 수립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토양오염 관리강화

### 가) 폐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

1990년대에 들어와서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1996. 1월에 토양환경보전법을 공포하였고 전국지역 토양오염 측정망을 구축하여 폐광산, 농경지 중 오염이 심한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과거에는 금속광산에 대해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생산성 악화와 광업계의 사양화로 현재는 대부분이 휴광 또는 폐광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을 강하게 산성화시켜 지표수와 지하수에 직·간접적인 수질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고성군은 오염을 최소화하기 폐광산오염방지사업을 1999년에 사업비 5억원으로 삼산광산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1년에는 삼아광업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최근에는 삼산 제 I, II 광산과 삼봉광산에 대하여 사업비 50억원을 투입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하였다.

### 나)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에 대한 오염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오염토양의 정화·복원 등 토양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지역에 대해 매년 1회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7개 지점 조사결과 전 지점에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오염도가 낮은 수준이다.

###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지역】

| 조사 지역 종류       | 조사 지 점         | 면적(m <sup>2</sup> ) | 비 고  |
|----------------|----------------|---------------------|------|
| 폐기물적치,매립,소각등지역 | 삼산면 판곡리 365-56 | 1,926               | 매립장  |
| 원광석,고철야적등 지역   | 하이면 덕호리 1008-4 | 654                 | 하이군호 |

|                |                |         |          |
|----------------|----------------|---------|----------|
| 원광석,고철야적등 지역   | 동해면 양촌리 1263-3 | 1,777   | (주)천해지주변 |
| 교통관련시설지역       | 고성읍 송학리 448-1  | 200     | 터미널 주변   |
| 폐기물적치,매립,소각등지역 | 하이면 덕호리 810-1  | 14,156  | 회처리장     |
| 폐기물적치,매립,소각등지역 | 하이면 덕호리 810-2  | 643,216 | 회처리장     |
| 폐기물적치,매립,소각등지역 | 하이면 덕호리 1181   | 225     | 회처리장     |

### 다)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토양오염 물질은 생산·운반·저장·취급·가동 또는 처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비·건축·구축물 및 장소 등을 관리하고 있다.

###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현황】

(단위:개소)

| 계  | 주 유 소 | 저 유 소 | 산 업 시 설 | 기 타 |
|----|-------|-------|---------|-----|
| 60 | 41    | -     | 7       | 12  |

### 3)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유독물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특성이 있는 물질이므로 유독물의 안전 및 돌발적 사고로 인한 주민보건 및 환경위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매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유독물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유독물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나. 대기오염관리

### 1)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사용연료 차종에 따라 규제항목의 국제기준과 다르게 설정하여 자동차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있으며 휘발유나 가스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 경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연을 규제하고 있으며 고성군은 운행차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차고지와 관내 자동차 운행다발지역인 고성실내체육관 앞 등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여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 2) 비산먼지 관리대책

### 가) 개요

비산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로써 체감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주로 건설토목공사에서 작업도중 바람과 함께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므로 방지대책에 한계가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토목공사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착공과 동시에 살수차와 세륜 시설 설치운영, 방진망이나 방진덮개 설치 그리고 관리인 비치 등으로 먼지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

| 구분<br>계 | 금속제품<br>제조 가공업 | 운송장비<br>제조 | 비금속물질<br>채취·제조·가공 | 건설업 | 저탄<br>시설 | 기타 |
|---------|----------------|------------|-------------------|-----|----------|----|
| 150     | 5              | 3          | 2                 | 140 | -        | -  |

### 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장 9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건설공사장에 대하여는 봄철 건조기 때 비산먼지발생억제 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된 운영시설을 점검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3) 소음·진동 관리대책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러한 소음·진동은 발생원인별로 보면 자동차, 항공기 등의 교통소음·진동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가동에 의해 발생하는 공장소음·진동, 건설공사를 할 때 그 장비들에 의한 건설소음·진동, 상업행위 등에 사용되는 확성기, 가전제품 등에 의한 생활소음이 주를 이루고 있다.

### 4) 대기배출업소 관리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 자연활동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가스, 먼지 및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상 해를 미치거나 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하며 크게 분류하여 가스상물질, 입자상물질 및 악취물질로 나눌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 두통 등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생태계에 대한 피해와 구조물의 부식현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기도 한다.

#### 가) 대기배출업소 현황

대기오염물질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과 자동차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등이 있다.

대기배출업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며 사업장의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라 청색, 녹색, 적색사업장으로 구분한다.

2008 현재 가동중인 우리군의 대기배출업소는 총 60개소이며 이중 대부분이 소규모인 5종 사업장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 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 60 | 4  | 4  | 3  | 23 | 26 |

| 구 분<br>계 | 화학제품<br>제조 | 고무 및<br>플라스틱<br>제품제조 | 비금속광물<br>제품 제조 | 음식료품<br>제조 | 목재 및<br>나무제품<br>제조 | 기 타 |
|----------|------------|----------------------|----------------|------------|--------------------|-----|
| 60       | 2          | 4                    | 8              | 15         | 2                  | 29  |

나) 2008년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2008년도 지도·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총 58개 대상업소 중 1개소를 적발하여 사용중지 처분을 하였다.

| 대상업소 | 위반업소 | 조 치 내 역 |      |      |      | 고발명행 | 배 출<br>부과금 |
|------|------|---------|------|------|------|------|------------|
|      |      | 경고      | 개선명령 | 사용중지 | 조업정지 |      |            |
| 58   | -    | -       | -    | 1    | -    | 1    |            |

5) 발전소 대기환경관리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주요 대기오염 배출물질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일산화탄소 등으로 이 중 최근 산성비,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오염실태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이 높다.

우리군에서는 발전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저유황탄 사용실태 조사, 대기기본부과금 부과, 월1회 배출구 오염물질 조사,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치 개정건의 등을 통하여 대기환경개선노력을 한 결과 2000. 10. 1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치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되며 사업자는 2004년 배연탈황시설, 탈질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주변지역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발전소 환경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환경친화형 발전소 구축을 목적으로

로 대기농도 자동측정망을 군호마을, 월흥초등학교, 하이면복지회관 등 3개소에 설치하여 1998. 7월부터 24시간 주변지역 대기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 다. 폐수배출업소 관리

수질오염이란 “주로 인간의 생활이나 생산 활동을 수반하여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호수 그리고 해양과 같은 공공수역에 유입되어 수질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수자원의 이용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상”을 말하며 생활하수,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등이 주 오염원이다.

산업폐수란 각종 산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폐수로서 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는 달리 고농도의 오염물질이며 유해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1) 폐수배출업소 현황

폐수배출업소는 1일 배출량에 따라 1종(2,000m<sup>3</sup>이상), 2종(700m<sup>3</sup>이상), 3종(200m<sup>3</sup>이상), 4종(50m<sup>3</sup>이상), 5종(50m<sup>3</sup>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군 사업장의 95%가 5종 사업장이며 일일폐수발생량은 2,899m<sup>3</sup> 정도이다.

#### 【규모별 사업장 현황】

| 구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 계  | -  | -  | 2  | 3  | 102 |

#### 【업종별 사업장 현황】

| 구분 | 계   | 1차 금속 | 가공 금속 | 고무 및 플라스틱 | 기타운수 장비수선업 | 기타 화학 | 도금 | 목재 | 비철 금속 |
|----|-----|-------|-------|-----------|------------|-------|----|----|-------|
| 합계 | 107 | -     | -     | 3         | -          | 4     | -  | -  | 1     |

| 사료<br>제조 | 사회<br>서비스 | 세탁업 | 세차업 | 식료품<br>제조 | 두부 및<br>유사식품 | 사진처리<br>시설 | 과실 및<br>채소가공 | 비금속<br>광물 | 기타 |
|----------|-----------|-----|-----|-----------|--------------|------------|--------------|-----------|----|
| 3        | 1         | 1   | 25  | 57        | 1            | -          | -            | 7         | 4  |

## 2) 단속실적

2008년에는 총 62개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업장은 없었음.

| 대상<br>업소 | 위반<br>업소 | 조 치 내 역 |      |      |      |    | 고발명행 | 배출<br>부과금 |
|----------|----------|---------|------|------|------|----|------|-----------|
|          |          | 경고      | 개선명령 | 조업정지 | 사용중지 | 기타 |      |           |
| 62       | -        | -       | -    | -    | -    | -  | -    |           |

## 3) 향후대책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대형사업장 위주 정밀점검 실시와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배출수 오염 부하량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개선,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지속 실시할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 수습·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수습방안을 모색 중이다.

## 라. 오수처리시설 현황 및 관리

경제성장에 따른 시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인구증가로 물의 사용량이 날로 증가함으로써 오수(汚水)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예방을 위해 1991. 3. 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하수종말처리

장이 없는 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생활오수” 를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토록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등 일정규모이하 건물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토록 하여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 를 정화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외의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 부근의 수질보호를 위해 1997. 3. 7. 『하수도법』 개정으로 오수를 다량 배출하는 위생접객업 사업장이 설치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분뇨정화조에서는 분뇨, 오수처리시설에서는 오수와 분뇨를 최종 처리 하는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우리군의 실정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직접 공공수역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을 야기하므로 계획 중인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주민 스스로가 생활오수의 발생량 저감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 1) 현 황

우리군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설치가 다소 감소할 것이다.

(단위:개수)

| 계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
|-------|--------|-------|
| 8,398 | 1,854  | 6,544 |

2)관리·지도점검 실적

(단위:개소수)

| 구 분 | 점 검 시설수 | 위 반 시설수 | 위반내역     |    | 조 치 |      |      |    |
|-----|---------|---------|----------|----|-----|------|------|----|
|     |         |         | 방류수 기준초과 | 기타 | 고발  | 과태료  | 개선명령 | 기타 |
| 계   | 432     | 10      | 8        | 2  | -   | (10) | 8    | -  |
| 오수  | 350     | 10      | 8        | 2  | -   | (10) | 8    | -  |
| 정화조 | 82      | -       | -        | -  | -   | -    | -    | -  |

※ 개선명령과 과태료는 병과처분사항임

하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에 대한 기능이 정상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상태확인을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관리인이 있는 200m<sup>3</sup>/일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연 2회, 기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마.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

우리군은 현재까지 전형적인 농어촌의 산업구조 형태로서 1차 산업이 주된 산업이며, 그 중에서도 가축사육농가가 많은 편이다. 더욱이 현재는 가축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가축분뇨 또한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이의 처리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가축분뇨 처리실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생물학적처리와 저장액비화방법등을 사용하였으나 현재의 추세는 가축분뇨를 방류하지 않고 처리하는 톱밥발효 처리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2) 배출시설 현황

| 구 분    | 계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
| 농가수(호) | 417     | 108    | 309     |
| 마리수(두) | 381,023 | 77,337 | 303,686 |

## 3) 지도점검실적

(단위:개소수)

| 점검<br>시설수 | 위반<br>시설수 | 위반내역        |         |          |    | 조 치 |     |          |    |          |
|-----------|-----------|-------------|---------|----------|----|-----|-----|----------|----|----------|
|           |           | 방류수<br>기준초과 | 무허<br>가 | 부적<br>정영 | 기타 | 고발  | 과태료 | 개선<br>명령 | 기타 | 병과<br>고발 |
| 463       | 1         | -           | 1       | -        | -  | 1   | -   | -        | -  | -        |

축산분뇨는 오염 부하량이 대단히 높아 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시 부영양화에 의한 수질악화는 물론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기때문에 군과 읍면 합동점검으로 퇴비사 적정운영, 축산분뇨 무단방류 등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닭, 양 등의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악취발생 억제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 4) 생활오수 및 가축분뇨의 향후 처리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발생으로 인한 하천오염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처리방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나름대로의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규제미만인 소규모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대단히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활오수의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하여 오염원의 제거가 가능할 것이며 가축분뇨의 경우는 오염물질을 방류하지 않고 톱밥 등을 사용 퇴비화하여 농지환원 처리방법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 바. 읍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균형발전과 농촌지역민의 고용증대로 소득향상을 기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읍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1990. 11. 20. 준공 운영하던 중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강화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공동전처리시설을 1996. 10. 18.(공사기간 1996. 1. 23. ~ 1996. 10. 18.)설치로 수질보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2004. 4월에 질소·인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을 읍대농공단지 입주협의회에 위탁 관리하여 책임의식 고취 및 경제적 유지관리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폐수종말처리장 현황】

| 구 분     | 위 치                 | 면적                   | 처리능력                   | 처리방식           | 방류수수질기준   | 사업비  | 준공일         |
|---------|---------------------|----------------------|------------------------|----------------|---|------|-------------|
| 공동방지시설  | 고성읍 읍대리 215-1, 49-2 | 1,398 m <sup>2</sup> | 1,000m <sup>3</sup> /일 | 부상분리 + 모래여과    | BOD : 1,650ppm<br>COD : 1,650ppm<br>SS : 1,230ppm | 3억5천 | 1996. 10.18 |
| 폐수종말처리장 | 고성읍 읍대리 149-2       | 2,979 m <sup>2</sup> | 1,000m <sup>3</sup> /일 | 활성오니법 + A2O+여과 | BOD : 30ppm<br>COD : 40ppm<br>SS : 30ppm          | 10억  | 2004. 4.30  |

작성자 : 환경지도담당 최 규 을  
 확인자 : 환 경 과 장 박 복 선

## 4. 청소행정

### 가. 쓰레기 발생 및 수거

생활수준 향상 및 소비성향의 변화로 매년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추세에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주민 의식은 높아

짐에 따라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은 1일 27.8톤으로 2004년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역내 수거 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며 불연성 쓰레기는 매립 처리하고 있다.

### 【쓰레기 발생 및 수거량】

(단위:톤/일)

| 연도   | 수거지역<br>인 구 | 수거지역내<br>쓰레기<br>발생량(톤/일) | 1인 1일<br>배출량(kg) | 수 거 량 |      |     |     |
|------|-------------|--------------------------|------------------|-------|------|-----|-----|
|      |             |                          |                  | 계     | 가연성  | 불연성 | 재활용 |
| 2008 | 56,397      | 27.8                     | 0.49             | 27.8  | 13.7 | 4.7 | 9.4 |

우리군에서는 1995. 1. 1.부터 쓰레기 감량화 시책인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을 추진 중이며, 관광지 등 다중이용장소의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암물박스를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 【인력 및 장비현황】

(단위:명, 대)

| 연도   | 청 소 인 부 |     |     | 청 소 장 비 |     |           |          |     |
|------|---------|-----|-----|---------|-----|-----------|----------|-----|
|      | 계       | 운전원 | 미화원 | 계       | 청소차 | 재활용<br>차량 | 암물<br>박스 | 손수레 |
| 2008 | 38      | 6   | 32  | 32      | 8   | 2         | 17       | 5   |

#### 나. 쓰레기 처리

2003년 삼산면 관곡리 349번지 일원 29,440m<sup>2</sup>를 매립장으로 조성하였으며 매립장내에 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및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침출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쓰레기 처리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 현황】**

| 위 치         | 면 적                  | 매립면 적                | 매립용량                 | 사용기간                   |
|-------------|----------------------|----------------------|----------------------|------------------------|
| 삼산면 판곡리 349 | 29,440m <sup>2</sup> | 13,275m <sup>2</sup> | 85,234m <sup>3</sup> | 2003.4.1. ~<br>매립종료시까지 |

**【쓰레기 소각 시설 현황】**

| 소 각 장 명     | 소각능력<br>(kg/시간) | 소각방식   | 준공년도   | 사 업 비<br>(백만원) |
|-------------|-----------------|--------|--------|----------------|
| 고성군생활폐기물처리장 | 1000kg/h        | 준연속연소식 | 2003.1 | 2,000          |

**【2008년 쓰레기 반입·처리내역】**

(단위:톤)

| 구 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반 입 량 | 10,144.1    | 812.4   | 766.5 | 825.3 | 872.0 | 911.0 | 863.0 | 950.2 | 913.2 | 941.5 | 782.9 | 706.2 | 799.9 |       |
| 치 리 량 | 소 각         | 2,793   | 258.0 | 208.0 | 261.0 | 261.0 | 263.0 | 207.5 | 120.0 | 249.5 | 230.5 | 250.0 | 224.5 | 260.0 |
|       | 매 립         | 3,917.2 | 281.2 | 328.9 | 306.0 | 336.1 | 351.9 | 365.0 | 497.4 | 338.0 | 381.7 | 248.1 | 231.1 | 251.8 |
|       | 재활용<br>(위탁) | 3,433.9 | 273.2 | 229.6 | 258.3 | 274.9 | 296.1 | 290.5 | 332.8 | 325.7 | 329.3 | 284.8 | 250.6 | 288.1 |

작성자 : 환경시설담당 박 석 수

확인자 :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현황 및 부과·징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천원)

| 연도   | 부 과 액   | 징 수 액   | 징수율(%) | 예산지출액     | 자립도(%) |
|------|---------|---------|--------|-----------|--------|
| 2008 | 393,923 | 393,923 | 100    | 2,286,000 | 17.2   |

**【쓰레기 봉투의 공급·판매 가격】**

(단위:원)

| 용 량  | 구 분   | 일 반 용 봉 투 공 급 가 격 |       |       |
|------|-------|-------------------|-------|-------|
|      |       | 공 급 액             | 판매수수료 | 판 매 액 |
| 5ℓ   | 가 정 용 | 84                | 6     | 90    |
| 10ℓ  | 가 정 용 | 160               | 10    | 170   |
| 20ℓ  | 가 정 용 | 305               | 25    | 330   |
| 30ℓ  | 가 정 용 | 460               | 40    | 500   |
| 50ℓ  | 가 정 용 | 755               | 55    | 810   |
| 75ℓ  | 가 정 용 | 1,150             | 80    | 1,230 |
| 100ℓ | 가 정 용 | 1,518             | 112   | 1,630 |

###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

(단위:원)

| 품 명          | 규 격                           | 처 리 비                   | 품 명          | 규 격                              | 처 리 비                              |
|--------------|-------------------------------|-------------------------|--------------|----------------------------------|------------------------------------|
| 냉 장 고        | 500ℓ 이상<br>300ℓ 이상<br>300ℓ 미만 | 8,000<br>6,000<br>4,000 | 화 장 대        | 모 든 규 격                          | 3,000                              |
| 텔레비전         | 42인치이상<br>12인치이상              | 5,000<br>3,000          | 장 식 장        | 모 든 규 격                          | 4,000                              |
| 세 탁 기        | 모 든 규 격                       | 3,000                   | 응접세트         | 장 의 자<br>의 자                     | 5,000<br>2,000                     |
| 에 어 콘        | 264㎡형이상<br>66㎡형이상<br>66㎡형미만   | 8,000<br>5,000<br>3,000 | 침 대          | 1인용<br>1인용메트리스<br>2인용<br>2인용메트리스 | 10,000<br>5,000<br>15,000<br>8,000 |
| 가스오븐<br>렌 지  | 높이<br>1m이상<br>높이<br>1m미만      | 4,000<br>2,000          | 캐 비 넷        | 모 든 규 격                          | 4,000                              |
| 탈 수 기        | 모 든 규 격                       | 2,000                   | 화 일<br>캐 비 넷 | 4단이상<br>3단이하                     | 3,000<br>2,000                     |
| 공 기<br>청 정 기 | 높이<br>1m이상                    | 2,000                   | 책 상          | 양수·대형<br>관수·소형                   | 5,000<br>4,000                     |
| 장 농          | 120cm 장1쪽<br>90cm 장1쪽         | 15,000<br>10,000        | 피 아 노        | 어프라이트<br>그 랜 드                   | 10,000<br>15,000                   |
| 서 랫 장        | 5단 이상<br>4단 이하                | 4,000<br>2,000          | 올 겐          | 모 든 규 격                          | 4,000                              |
| 식 탁          | 6인용 이상<br>6인용 미만              | 5,000<br>4,000          | 신 발 장<br>문 갑 | 모 든 규 격<br>모 든 규 격               | 2,000<br>3,000                     |
| 경 운 기        | 모 든 규 격                       | 10,000                  | 트 랙 트        | 50마력이상<br>50마력미만                 | 15,000<br>12,000                   |
| 이 양 기        | 승 용<br>보 행                    | 12,000<br>9,000         | 바 인 더        | 모 든 규 격                          | 9,000                              |
| 컴 바 인        | 모 든 규 격                       | 20,000                  | 탈 곡 기        | 모 든 규 격                          | 10,000                             |
| 분 무 기        | 자 동                           | 8,000<br>6,000          | 양 수 기        | 5마력이상<br>5마력미만                   | 9,000<br>7,000                     |

## 5. 고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가. (구)매립장 부지활용

- 1) 매립완료일 : 2003. 4. 1.
- 2) 활용용도 : 골프연습장
- 3) 위 치 :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390번지 일원(구.쓰레기매립장)
- 4) 상 호 : 고성골프랜드
- 5) 개 관 일 : 2007. 11. 26.
- 6) 운 영 자 : 삼산면 판곡마을
- 7) 골프연습장 현황
  - 총부지면적 : 36,684m<sup>2</sup>
  - 비거리 : 220m
  - 타석수 : 40타석  
(2층 20타석, 3층 20타석)
- 8) 주요시설물 현황
  - 페어웨이 : 220m 이상
  - 골프연습장 건물 : 1동
  - 침출수 저류조 : 1동
  - 주차장 : 63대 주차가능



### 나. 현 매립장 현황

- 1) 위 치 :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349번지 일원
- 2) 운 영 자 : 군 직영
- 3) 가동개시일 : 2003. 4. 1.
- 4) 사 업 비 : 8,600백만원
- 5) 부지면적 : 29,440m<sup>2</sup>
- 6) 매립면적 : 13,275m<sup>2</sup>
- 7) 매립용적 : 85,234m<sup>3</sup>

- 8) 매립방식 : 셀방식에 의한 준호기성 매립방식
- 9) 주요 부대시설
  - 가) 소각시설 1식 : 1톤/hr
  - 나) 침출수처리장 1동 : 30m<sup>3</sup>/일
  - 다) 관리사무소 1동

## 6.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 가. 재활용품 수거

군에서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성읍·회화(배둔)·거류(당동)은 매일, 기타 면지역은 매월 2회씩 순회수거를 실시하여 일반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재활용품 수집실적】

(단위:톤/일)

| 연도   | 계   | 종이류 | 병류  | 고철류  | 캔류   | 플라스틱류 | 기타   |
|------|-----|-----|-----|------|------|-------|------|
| 2008 | 1.6 | 0.1 | 1.2 | 0.07 | 0.07 | 0.1   | 0.05 |

### 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해 고성읍 5개리, 회화면 배둔리, 거류면 당동리 등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7.7톤/일 정도를 민간재활용시설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침출수와 악취 발생 저감으로 매립시설의 위생적 관리 및 사용연한 연장에도 일익을 도모하고 있다.

## 7. 환경대청결운동

정부와 시민운동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이기주의로 흐르는 국민심성으로 함부로 버려지고 무절제하게 배출해 낸 각종 쓰레기 등에 의해 국토가 날로 황폐화 되어감에 따라 범정부적인 추진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전 국토에 걸쳐 버려진 쓰레기를 말끔히 수거 정리하기 위하여 환경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공공기관, 군부대, 각급학교, 금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마을주민 등 4,200여명이 151개소에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약 23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

## 8.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관리는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므로 이용객의 불편함 해소 및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연중 4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청결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족암군립공원과 연화산도립공원 등 공중화장실은 민간위탁관리로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공중화장실 현황 (2008)】

| 계  | 행 정 시 설 |      |    |     |      |    | 민 간 시 설 |    |     |     |     |
|----|---------|------|----|-----|------|----|---------|----|-----|-----|-----|
|    | 소계      | 체육시설 | 공원 | 관광지 | 터미널등 | 기타 | 소계      | 시장 | 터미널 | 주유소 | 휴게소 |
| 72 | 27      | 3    | 12 | 8   | 2    | 2  | 45      | 4  | 1   | 37  | 3   |

작성자 : 환경미화담당 최 정 란

확인자 : 환 경 과 장 박 복 선